

증평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

[2018. 11. 2
예규 제20호]

일부개정 2022. 12. 29 예규 제29호
(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
「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
지침」 등 일부개정예규)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증평군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운동기구 이용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증평군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설치장소)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장소에 설치한다. <개정 2022. 12. 29>

1. 설치부지가 증평군 또는 마을의 공동소유일 것
2. 야외 운동기구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용이할 것.

제4조(설치기준)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운동기구 설치 부지의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할 것
2. 안전기준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
3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할 것

가. 관리번호 및 기구명

나. 관리주체 및 연락처

다. 운동기구 사용방법 등 그 밖에 야외 운동기구의 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관리주체) ①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 관리 부서의 장(이하 “총괄관리자”라 한다)이 총괄하여 관리한다. <개정 2022. 12. 29>

② 개별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이 된다.

제6조(관리방법) ① 총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성능·안전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증평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

-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직접 보수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리자에게 보수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관리자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,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총괄관리자나 관리자(이하 “관리자등”이라 한다) 는 이용자의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관한 건의사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.
- ⑤ 관리자등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·보수·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2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영조물배상공제의 가입) 관리자등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22. 12. 29 예규 제29호,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

「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」 등 일부개정예규)

이 예규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안 내 문(예시)

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	
관리번호	
기 구 명	
관리주체	
연 락 처	

[별지 제2호서식]

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

		관리번호	00읍면-00리--부여번호	
위 치				
유 형	ex) 공터	관리부서 (설치부서)		
설치기구	총 () 중 / ()점			
관 리 실 태				
기 구 명	설치일자	상 태	구입액	설치회사 (연락처)
ex)허리돌리기				
현장사진				

※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

㉠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,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